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16
----------	-----

2022. 4. 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김지훈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재정지원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보조금 점검과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대한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의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에는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이나 사무 위탁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사항

조례안 내용	의견	실무부서 의견 (대중교통과)	반영 여부
조항 신설	-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때 남양주시장과 협의하여 버스노선의 일부 변경에 대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과 운수사업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 신설 의견은 조례안과 중복됨.	미반영
	- 이때 시장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이용승객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금액을 증·차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4조(재정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이용승객 등을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금(운수업계보조금)을 산정하므로, 조항 신설 의견은 조례안과 중복됨.	미반영

○ 의견제출 사항 반영여부 : 미반영

붙임 :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